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13일, 전현희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전현희의원)

의료인이나 약사 면허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되어 보험급여비용의 환수가 결정된 병원·약국은 2010년부터 20

23년까지 모두 1,712개소이고 총 환수결정액은 약 3조 4,000억원에 이르나, 그 환수율은 6.79%에 불과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면허대여약국은 일단 개설하고 나면 정상적인 약국과 구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관리와 감독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에 면허대여약국 개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최선임.

이에 약국의 개설등록 또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신고 전에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통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가 약국 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제5호, 제20조의3 신설 및 제21조의2제2항 후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 ☐ 개정안은 약국 개설등록의 요건과 절차를 보완함으로써 면허를 대여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 첫째,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및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이 면허 대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약사(藥事) 관련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약국 경영윤리에 관한 사

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약국의 건전한 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면허 대여 행위는 통상 법령에 대한 인지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의도적인 위법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 교육 이수가 면허 대여 행위를 억제하는 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둘째, 개정안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등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약국개설자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역단체인 약사회·한약사회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견 제시 절차를 두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약사회·한약사회는 모든 약사·한약사를 회원으로 하는 직역단체로서 약국 개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바, 개설자격 판단에 관한 의견 제시를 해당 단체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개정안은 의견의 법적 구속력 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청이 직역단체의 부정적 의견을 사실상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민간단체가 약국 개설에 대한 실질적 사전심사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로 작동할 우려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서영석)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